

살인사건에 관한 오보가 사자의 유족(어머니)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된 사례

<사실개요>

X의 딸이며 X1, X2의 실매인 A는 정강현부사시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1977년 10월 26일 밤 같은 아파트 옆방에 사는 C에게 과도로 찔려 즉사했으며 남편인 B도 과도에 질려 중상을 입었다. Y기자는 다음날인 27일 「정강신문」 석간에 삼각관계로 얽혀, 부사의 부부살상사건, 칼로 마구 찔러』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기사를 보도했다. 「C는 슈퍼마켓의 점원으로 근무하는 A와 최근에 가까워진 사이인데 이날 밤 범행시간 5분전에 A에게 「단둘이 함께 있고 싶다」고 말했으나 거절 당하자 갑자기 갖고 있던 9.6센치 길이의 과도로 A와 B를 찔렀다고 경찰에서는 보고 있다」 그런데 X등은 신문이 「삼각관계로 얽혀」라는 충격적인 제목으로 보도하여 마치 A가 남편 이외의 남자와 육체관계를 가친 것처럼 일반독자에게 강한 聯想을 주었으며 기사 내용에도 「내연의 처」, 「C가 최근 A와 가까와져 ……」 등의 표현이 있어 제목과 함께 독자에게 한층 더 A의 난잡한 이성관계를 상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삼각관계로 얽혀」는 전혀 근거가 없는 허위보도일 뿐 아니라 이로 인해 A의 명예는 물론 유족인 X등도 현저하게 그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하면서 Y기자에 대해 위자료 300만엔과 사죄광고의 게재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Y기자는 (1) 「삼각관계」라는 것은 단순히 복잡한 남녀관계를 의미하는 것일 뿐이며 반드시 육체관계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기사에 오보가 있다 하더라도 부사서 차장과 아파트 관리자로부터 취재한 결과이므로 기자나 편집자에게는 과실이 없다. (3) 가령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손 치더라도 그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판결은 우선 허위의 신문보도에 의해 사자의 명예가 훼손되고 또 이에 의해 근친자의 명예가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근친자라도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리고, 「정강신문」의 제목과 기사내용이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이 기사에 의해 A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됨과 동시에 어머니 X도 떳떳하게 갈 수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어 사자의 명예가 회복되지 않는 한 X도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Y기자에 대해 위자료 30만엔을 X에게 지불하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판결은 언니들인 X1, X2의 청구에 대해서는 어머니인 X에게 손해배상이 인정됨에 따라 사자인 A의 명예가 회복되는 결과를 가져왔으므로 그들의 사회적 평가가 대기할 만큼 저하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 이를 기각하고 사죄광고에

대해서도 사건 후 3년 이상이나 지난 것을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이는 사자의 유족들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제기한 손해 배상청구가 인정된 최초의 판례이다.

<판결요지>

1. 먼저 명예훼손 여부를 검토해본다. 본건기사의 제목으로 쓰여진 「삼각관계」라는 자구는 본래 3인의 남녀간의 복잡한 연애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나 그 용법은 반드시 본래의 의미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으며 광의로는 3인의 남녀간의 불륜한 육체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도 사용되고 있음이 현저하다. 따라서 본건기사의 제목 「삼각관계로 얽혀」라는 표현은 기사본문에 있는 「내연의 처」, 「C가 슈퍼의 점원으로 근무하는 A와 최근 가까이 지내고 있다」, 「단둘이 함께 있고 싶다」 등의 표현과 관련시켜 볼 때 사자 A와 C와의 사이에 마치 불륜의 육체관계가 있는 것과 같은 인상을 일반독자에게 주고 있어 A가 불륜의 이성관계를 갖고 있는 여성인 것처럼 인식되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2. 사실의 진실여부를 「증거」에 의해 볼 때 사자 A는 72년 C와 결혼한 부인으로 남녀관계에서 특별한 소문 같은 것도 없이 진실하게 평온한 생활을 보내고 있었던 바 정신분열증으로 입원했던 C가 76년 퇴원하여 A의 아파트 옆방으로 입주해 왔다. 이들은 C가 입주한 이래 줄곧 이웃으로 인사를 나눌 정도였으나 특별한교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본건사건에 있어 C가 사자 A에게 결혼을 간청했다는 외형적 사실은 있었으나 그것은 C가 정신분열증의 재발에 의해 망상을 갖고 일방적으로 A에게 호의와 이상한 행동을 보인 것으로 인정되어 본건기사의 제목, 기사내용 모두가 진실에 반하는 허위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3. 허위의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본건 기사에 의해 사자 A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것은 이상과 같으나 유족인 원고 등의 명예도 훼손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해 판단한다. 「증거」를 종합해보면 원고 등은 본건기사 게재 이후 본건기사를 진실인 것으로 받아들인 피고신문의 일반독자가 다수 거주하고 원고 등도 살고있는 부사궁시와 그 주변의 지역사회에서 사자 A의 어머니 또는 언니로서 세속적 관심의 대상이 됨으로써 이웃을 꺼리게 되고 떳떳치 못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사회생활상 어떤 자의 명예의 저하가 근친자 등의 명예에도 영향을 미치는 일이 있다는 실정을 고려할 때 신문기사에 의해 사자의 명예가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평가의 저하는 사자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 부모, 자식 등 근친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미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세속적 관심이 높은 신문기사일 경우에는 더욱 더 그러하며 특히 원고인 사자 A의 어머니의 경우에는 본건 기사에 의해 그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고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과 같이 신문기사의 허위사실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에 의해 근친자의 명예까지 훼손하기에 이른 경우에는 그 기사게재가 근친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사자 A의 언니인 원고 XI, X2에 대해서는 사회적 평가가 특기할 만큼 저하되었다고 인정될 수 없으며 사자 A의 어머니인 원고 X에 대한 손해 배상청구권이 인정되므로써 사자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원고 XI, X2에 대한 Y기자의 불법행위 구성은 인정할 수 없다.

4. 본건기사게재에 대한 과실유무를 검토해본다. 「증거」에 의하면 본건사건을 인지한 피고의 취재담당기자는 사건이 일어난 날 밤과 다음날 아침 취재차 부사경찰서에 들러 담당관으로부터 사건의 개요를 듣고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가해자 C의 진술로서 사자 A에게 결혼을 간청했으나 거절당했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어 아파트주인으로부터 가해자 C가 본건사건의 약 1주일 전 『생리가 끊긴 것을 보니 임신한 것 같다. A와 결혼할거다』라며 기뻐하더라는 것을 취재하면서 A와 C간에 육체관계까지 있는 것으로 속단했으며 피고의 편집담당자도 취재기자의 취재내용과 판단을 그대로 채택하여 본건기사가 게재되었음이 인정된다. 신문보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절대적이고 한번 사실이 보도되면 그 사실은 진실로서 일반 독자에게 수용되고 유포되므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이 범죄사실의 보도로서 전적으로 공익을 도모하는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정확성을 최대한 존중하여 신중한 보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신속성을 추구하는 나머지 오보에 의해 남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특히 살상사건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위험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성이 더욱 요청되며 더욱이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그의 근친자에 미칠 중대한 영향까지도 배려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처사이다. 「증거」에 의하면 범행의 동기에 대한 가해자 C의 진술도 극히 간략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아파트주인의 경우도 취재기자에 대해 C의 이상한 언동을 전술한 내용과 같이 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있으나 이같이 중대하고 복잡한 살상사건의 취재를 함에 있어 기자가 사자 A나 가해자 C의 일상생활조차도 확인하지 않고 그들 사이에 육체관계가 있었다고 속단한 것은 경솔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또 다른 「증거」에 의하면 조일, 독매, 산계이, 중일 등의 각 신문은 본건사건에 관해 같은 경찰발표로 취재하면서도 보도에서 그 같은 표현을 하지 않고 있었다. 이상과 같은 사실을 고려할 때 피고인 취재기자 및 편집담당자가 경찰발표와 아파트주인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결합시켜 A와 C 사이에 육체관계가 있었다고 판단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본건 기사게재에는 과실이 없었다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본건기사의 게재에 의한 원고 X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에 근거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져야만 한다. 원고가 그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로서 제기한 사죄광고의 게재에 대해서는 1977년 11월 22일 본건사건이 SBS TV의 「아프터눈·쇼」에 보도되어 C가 정신분열증 병자이며 본건범행이 C의 정신분열증에 의한 망상에 기인한 것이었다는 사정이 명백하게 알려졌고 A와 C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피고신문과는 달리 정확하게 보도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의해 사자 A 와 원고 X 의 사회적 평가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사건으로부터 3 년 이상 경과한 현시점에서 사죄광고를 게재하여 다시 한번 사회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은 오히려 명예 회복의 조치로서는 적당하지 않으므로 위자료 외에 사죄광고의 게재를 인정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